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-17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대규모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,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구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단의 설치·운영, 구성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단장 임무, 실무팀의 편성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, 평가 및 기록(안 제7조~제8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 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10. 8. ~ 10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11.3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 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
2. 활동관리팀

3. 활동지원팀

4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,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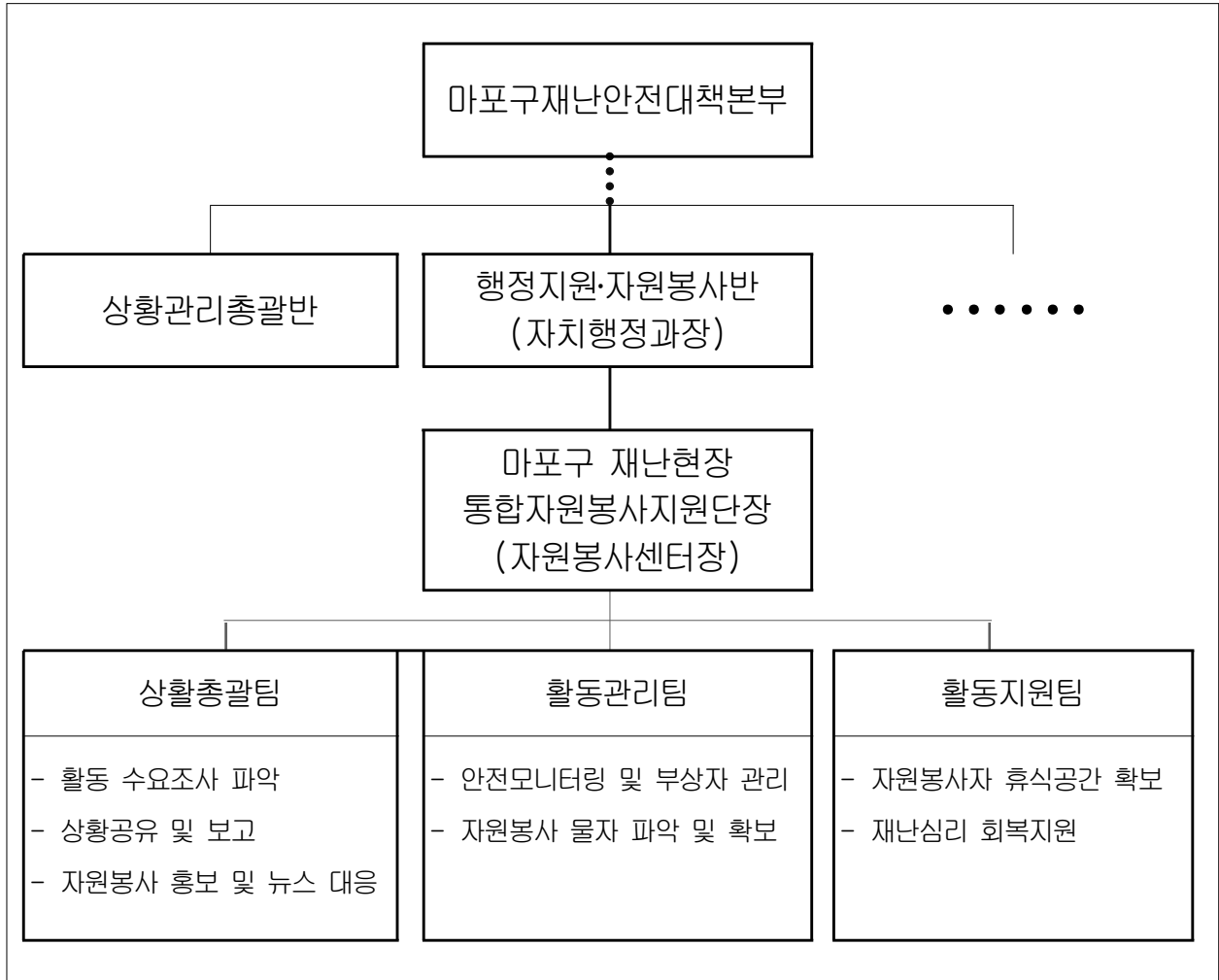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2]

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

팀명	직위	담당 사무
단장	마포구 자원봉사센터장	▶ 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상황총괄팀	자원봉사센터 재난관리 담당자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▶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 ▶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
	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활동 수요 조사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총괄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 ▶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
활동관리팀	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·확보
활동지원팀	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총괄 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

비 고

-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3조(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소요됨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성화영 (☎ 3153-8324)